

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

두산밥캣코리아(주)

1.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.서비스 명칭 및 내용

- 명칭 :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
- 내용 :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지게차의
수소충전 안전성과 효율성 검증

2. 규제특례 구역.기간 및 규모

- 구역 : 인천남동농협 수소충전소 및 유니투스 충주공장
- 기간 : 2년
- 규모 : 고정식 수소충전소 2개소(남동농협 / 유니투스) 및
두산밥캣코리아 수소연료지게차 4대

3. 법 제10조의3 제7항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

- (충전안전성)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소연료전지 기계차에 대한
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허용
- (안전관리계획)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
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
- (안전성 검증)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한국가스
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 승인 필요
- (자료 제공 협조)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
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충전 데이터, 유지보수 등에
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

- . 대인 1.8억 / 1사고당 (총 보상한도 무한)
- . 대물 10억 / 1사고당 (총 보상한도 무한)

5. 그 밖에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- . 공통조건 :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- . 공통사항 :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